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8. 12. 19
시민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12월 17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1998년 12월 18일

다. 상정일자 : 제58회 정기회 제12차 위원회('98.12.19)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윤희용 청소행정과장)

가. 제안이유

국난극복을 위해 정책적으로 실시되는 구조조정과 관련, 서울특별시 노동조합의 '98노사협의회 합의에 따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중 재활용품을 수집·선별하는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던 장려금 및 후생복지 비용지급 조항을 삭제하여 기금설치의 본래 목적대로 재활용 사업에만 기금을 사용토록 하고, 기금의 예치·관리금융기관에 대하여 불명확한 점이 있었으나 이를 구금고로 특정하여 정비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기금의 사용용도중 재활용품을 수집·선별하는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던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조항을 삭제함(안제4조 제2호)

기금의 관리는 서울특별시마포구 금고에 예치·관리토록 함(안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김건재 전문위원)

-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4조 제2호 및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중 일정비율(40% 이내)을 재활용품을 수집·선별하는 환경미화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 비용으로 지급해 왔으나, 국난극복을 위해 정책적으로 실시되는 구조조정과 관련, 사용자인 서울시의 요청으로 개최된 '98임시 노사협의회의('98년10월12일) 결과,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98년11월1일부터 재활용품을 수집 선별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장려금 및 후생복지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된 것임.
- '98년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내역('98년12월 15일 기준)을 보면, '97년 이월금과 '98년 수입금을 합한 389,283천원중 '98년 156,286천원을 지출하여 현재 잔액은 232,997천원임.
-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동 기금 지출내역에 용도에 맞지않게 지출되는 사례가 일부 지적된바, 향후 조례제4조제1호에 의한 "재활용품수집 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 용도에 적합하게 효율적으로 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질의요지(김유현 위원) : 재활용품 관리기금은 쓰레기 감량화나 퇴비화 정책에 사용해야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 답변요지(윤희용 청소행정과장) : 예. 노력하겠음.
- 질의요지(이종일 위원) : 야간수당도 삭감된 가운데 관리기금 장려금을 미지급 함으로써 사기에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장려금으로 월 얼마를 지급 하였는지
- 답변요지(윤희용 청소행정과장) : 장려금으로 월 5만원을 지급 하였으며, 미지급하여도 큰 문제는 없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8.12.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의안번호.	
-------	--

1. 개정이유

국난극복을 위해 정책적으로 실시되는 구조조정과 관련, 서울특별시 노동조합의 '98노사협의회 합의에 따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중 재활용품을 수집·선별하는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던 장려금 및 후생복지 비용지급 조항을 삭제하여 기금설치의 본래 목적대로 재활용 사업에만 기금을 사용토록 하고, 기금의 예치·관리금융기관에 대하여 불명확한 점이 있었으나 이를 구금고로 특정하여 정비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기금의 사용용도중 재활용품을 수집·선별하는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던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조항을 삭제함(안 제4조제2호)
 나. 기금의 관리는 서울특별시마포구 금고에 예치·관리토록 함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재정법('97.12.13 법률 제5454호) 제64조 및 제110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98.7.16 대통령령제15836호) 제74조 및 제156조
- 지방자치법('95.12.29 법률제5069호) 제13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필요없음.

라. 기타사항 : 없음.

첨부 :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구청장은 기금을 서울특별시마포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중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기금의 용도)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한다.</p> <p>1.(생략)</p> <p>2.재활용품을 수집·선별하는 환경미화원의 <u>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u></p> <p>3.(생략)</p>	<p>제4조(기금의 용도)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한다.</p> <p>1.(현행과 같음) (삭제)</p> <p>2.(현행 제3호와 같음)</p>
<p>제5조(기금의 운용·관리)구청장은 기금을 은행법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한다.</p>	<p>제5조(기금의 운용·관리)구청장은 기금을 서울특별시마포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한다.</p>
<p>제7조(기금의 사용)①(생략)</p> <p>②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u>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판매대금의 40 퍼센트 이내로 한다.</u></p>	<p>제7조(기금의 사용)①(현행과 같음)</p> <p>②----- ------(단서삭제)</p>